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3-28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5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15누5054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
원고, 항소인 겸 피항소인

주식회사 A

[redacted]

피고, 피항소인 겸 항소인

[redacted]시 [redacted]구청장

[redacted]

피고보조참가인 [redacted]시장

[redacted]

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5. 6. 17. 선고 2014구합69716 판결

변 론 종 결 2019. 1. 9.

판 결 선 고 2019. 1. 30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3-28

주 문

1.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

2.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.

3.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,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피고가 2014. 7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. 부과처분표 기재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
2. 항소취지

원고 :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. 피고가 2014. 7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. 부과처분표 기재 각 과세처분 중 본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란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.

피고 : 제1심판결 피고 패소부분 중 피고가 2014. 7. 10.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. 부과처분표 기재 각 과세처분 중 지방교육세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란 기재 각 과세처분 부분을 취소하고,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9-03-28

로,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(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).

2.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

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,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(대법원 2017. 6. 29. 선고 2017두38621 판결 등 참조).

살피건대, 제1심판결 선고 후 이 법원에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,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더 이상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.

3. 결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,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배광국

판사 김종기

판사 송혜정